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5월 7일

나. 발 의 자: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민성 · 김영태 ·
김재우 · 박교상 · 신용하 · 양진오 · 이정희 ·
이지연 · 정지원 추은희 · 허민근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2024년 5월 8일

라. 상정일자: 2024년 5월 17일

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김 원 섭 의원

나. 제안이유

- 상위법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며, 그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전점검 등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제43조, 제44조, 제49조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제31조
-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장 창 곤

○ 본 개정조례안은

- 수상레포츠 안전점검 의무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관리자는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

- 안 제14조는 상위법인 「수상레저안전법」의 전부개정(2023. 6. 11.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개정이 필요함. 집행기관에서는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정비를 더욱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보험등의 가입) 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u>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체험 또는 강의와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u></p>	<p>제15조(안전점검 등 조치) 시장은 <u>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설의 안전점검</u> 2. <u>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태의 확인</u> 3. <u>시설 내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의 훈련 및 배치</u> 4. <u>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u>

<신 설>

등의 안전장비 비치

5. 탑승 전 사용자에게 대한 안전
장비 착용조치 및 안전교육

제16조(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포츠 체험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영업구역의 기상 및 수상 상
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자가
단독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
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는 기본적인 안전점검 등 조치를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수상레포츠 체험 이용제한에 관하여는 관리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2023년 한해동안 4,603명의 이용객이 이용하였으며, 월1회 정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없이 운영되었으나

시설 노후화, 기상 및 수상 상태 변화, 이용객 증가 등에 대비한 더욱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구조인력 확보에 관한 자체계획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